

2021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 발 예 정 인 원	비고
2021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간 호	3	

2. 시험절차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21.10.14. ~ 10.31. (18일간)
- 응시원서 접수 : '21.11.01. ~ 11.03. (3일간)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거주제한, 자격증 등 자격요건 심사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1차.2차 시험 병합실시)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직렬 및 직급	직류	시험과목		시험시간
		1차	2차	
간호(8급)	간호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60분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평가기준 : 5개 항목(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 1) 202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1.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위의 두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1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간 호	간 호 사

라. 시험일정(예정)

시 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1.10.14.(목) ~ 2021.10.31.(일) (18일간)	2021.11.01.(월) ~ 2021.11.03.(수) (3일간)	필기시험	2021.11.08.(월)	2021.11.20.(토)	2021.11.23.(화)
		면접시험	2021.11.23.(화)	2021.12.02.(목)	2021.12.06.(월)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화천군 홈페이지(<http://www.ihc.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3.(수),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화천군 자치행정과(2층)

- 우편주소 : [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FAX 제출 불가)

등기우편 접수 시, 겹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11.3.(수) 소인분에 한해서 접수합니다.
-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 1]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 × 4.5cm)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 ❖ 응시자는 화천군 수입증지(5,000원권) 구입 후 원서제출(구입처 : 화천군청 1층 민원봉사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3)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4) 이력서[붙임 2] 1부

5) 자기소개서[붙임 3]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4]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붙임 5] 1부

6.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는 가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이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을 의미합니다.
- 바.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될 수 있습니다.
- 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아. 필기시험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화천군에서 자체출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 차.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 조회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40-22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